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12. 13 선고 2023나12461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인천) 2023. 12. 13 선고 2023나12461 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25700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호사 유병일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23. 11. 1.

판결선고 2023. 12. 13.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5. 11. 선고 2022가단25700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 체결된 제1심 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2022. 2. 25.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2. 2. 28. 접수 제631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 주식회사 A”을 “주식회사 A”로, 각 “피고 A”을 각 “A”로, “피고 주식회사 B”, 각 “피고 B”는 각 “피고”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3행 “(이하”부터 “한다)”까지를 삭제한다.
- 제1심 판결 제4면 제7행 “피고들”을 “피고와 A”로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13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A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원고의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피보전권리가 된다. A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추후 신용보증사고의 발생에 따른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예상하고 채권자 중 하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A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긴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으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 제1심 판결 제6면 제14행 “1)”을 “2)”로, 제7면 제9행 “2)”를 “3)”으로, 제7면 제16행 “3)”을 “4)”로 각 고친다.

○ 제1심 판결 제7면 제16행과 제17행 사이에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수익자인 피고는 선의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 제9면 제3행 “설득력이 있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피고의 선의 여부 판단에 있어 위와 같은 강제경매절차 진행을 상정하지 않고 A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만을 문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피고가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인 위 강제경매신청의 취하를 도외시하고 선의 여부를 논할 수는 없다)』

○ 제1심 판결 제9면 제6행 “근저당권권설정등기”를 “근저당권설정등기”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중철, 판사 이형원, 판사 김은경